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3

2024. 04. 29.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04월 0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나.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고, 회의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나.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개요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전문적인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심의회는 당연직 내부위원(공무원 4명)과 위촉직 외부위원(시의원 4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6명 이내)으로 구성되며, 학술용역 상정 안건의 전문 분야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심의회 구성 현황 >

◦ 임기 : 2024.4.18. ~ 2026.4.17.
◦ 위원 : 총 41명 ※ 여성위원 20명(54%)
- 내부위원(4명)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37명) : 시의원(4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33명)
- 분야별 위원 구성

구분	계	행정재정	환경	건설안전	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경제일자리	아동·청(소)년교육양성평등	보건의료복지
위원	33	5	7	3	3	2	3	3	2	3	2

○ 동 회의는 정기(9월) 및 수시(3월~10월, 신청 건수에 따라 실시)로 운영되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가 필요한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개최됨.

○ 참고로 서울시는 2023년에 도입된 사전검토회를 통해 1차적으로 학술용역의 과제 수행 방식 및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 심의회는 사전검토회에서 학술용역으로 결정된 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 사전검토회 및 심의회 운영 결과 >

◦ 사전검토회 운영 결과

구 분	합계	연구원 자체연구	학술용역	부서 자체수행	보 류*
신 청	129	62	67	-	-
결 정	**131**	**39**	**50**	**30**	**12***

* 보류 : 서울연구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부재로 수행 불가, 추후 학술용역 추진 시 별도의 사전검토 생략 후 신청 가능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결과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심의실적	**46건**	**55건***	9건
부적정 결정 건	**10건**	**10건**	-
부적정 비율(%)	**21.7%**	**18.2%**	△3.5%

* 심의실적(55) = 사전검토회 학술용역 결정 건(50) - 사전검토 후 학술용역 미신청 건(4) + 재심의 건(9)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외부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안 제9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회 회의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141호, 2023.7.25.).

관련 자치법규	세부 권고사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심의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도 개최 실적(정기1회, 수시4회)을 살펴보면, 위촉위원의 참석 비율이 매우 낮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 2023년 심의회 위원구성 현황 >

	4월(수시)	6월(수시)	8월(수시)	9월(정기)	10월(수시)
당연직	4명	3명	4명	4명	4명
위촉직	3명	4명	3명	7명	6명
위촉직 비율	43%	57%	43%	64%	60%

○ 따라서 안 제9조제3항은 일관성 있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회의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양성평등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1]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음[2].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3]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도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임.

○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참고로 위촉위원 성별기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조

---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양성평등담당관-19120(2023.11.20.) (창의행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안내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례안에는 그 비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됨.

(3)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안 제3조 ~ 제19조)

○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조문 구성의 오류를 치유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조례가 구성 절차에 맞는 조문 체계를 갖춤으로써 타 자치법규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관련 내용> - 위원회 규정방식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3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1. 16. ~ 12. 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2133-78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시장 또는”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을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로, “제3조제2항”을 “제4조”

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종전의 제6조)제6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의”로, “된다”를 “각각 맡는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안건”을 “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무원, 전문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3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의회에”를 “시의회에”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을 “회의에 참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삭 제>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람 중에서---------- --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부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2.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 (생 략)	제7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기능) <신 설>	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

	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8. ----------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 --------
제5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9조(회의)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 ---------- 제4조---------- ---------- ---------- ---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	④ 회의----------

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회의의---------- 각각 맡는다.
제7조(위원장) ①·②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제8조(임기) ①·②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안제출) ① (생 략)	제11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의안-------------------------------.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예외로 한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	제13조(의견청취 등) -- 공무원, 전문가 ------------------------------

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② (생 략)	제14조(점검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누리집 ----------.
제13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1. 제14조제3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제15조(회의록 등) ① (생 략)	제18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시의회에 ----------.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 ---------- ----------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부서명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주무관(2133-7829)